



『人間의 義務에 關한 世界宣言』

序言 : 人間의 義務에 關하여 言及할 時가 되었습니다.

世界經濟의 國際化 趨勢에 相應하여 各種問題들도 國際化의 性格을 띠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國際的 問題의 解決 또한 모든 나라, 社會와 文化가 다 함께 尊重할 수 있는 規範이나 價値 또는 理念을 基礎로 할 때에 비로소 國際的 解決策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人間 모두가 동등한 基本的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認識은 自由, 平和, 그리고 正義에 바탕을 둘 때에 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人權에 관한 認識도 그 바탕으로서는, 모든 男女가 모두 平和스럽게 더불어 살며, 그들의 潛在力을 發揮할 수 있게 하려면, 人間의 權利에 못지 않게 人間으로서의 義務 또한 重要하다고 하는 倫理的 基礎가 확고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國內적으로나 國際적으로 더 나은 社會秩序란 결코 法이나 規約 또는 協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 倫理가 있을 때에 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進歩를 바라는 人間의 所望은, 어느 時代, 어느 制度, 그리고 어느 國民들에게나 適用할 수 있는 合議된 價値觀과 基準이 있을 때에만 비로서 成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8年은 「유엔」이 「世界人權宣言」을 採擇한지 50周年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1998年이야말로 「世界人間義務宣言」을 採擇하기에 좋은 機會라 생각합니다. 즉, 「世界人間義務宣言」이야말로 「世界人權宣言」을 補強시켜줌으로써,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引導하여 줄 것이라 믿기 때

문입니다.

「人間으로서의 義務」에 관한 다음의 草案은 「自由」와 「義務」間에 均衡을 잡아줌으로써, 「自由」가 「無關心의 自由」로 부터 「參與의 自由」로 進展되어 가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個人이나 또는 國家가 남의 自由를 犧牲시켜 가면서 까지, 자기들의 自由만을 極大化시키고자 한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苦痛을 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人間들이 地球의 自然資源들을 마구잡이로 희손시키면서 까지 그들만의 自由를 極大化시켜 간다면, 우리 後孫들은 훗날, 크게 苦痛을 받게 될 것입니다.

「人間의 義務에 관한 世界宣言」 草案을 마련하게 된 動機는 단순히 自由와 義務間에 均衡을 잡아주자는 데에 局限된 것만은 아닙니다. 즉, 이와 같은 「人間의 義務」에 관한 宣言文이 意味하는 것은, 過去에는 서로 敵對적이기 쉬웠던 理念이나, 信念體系 또는 政治的 觀點들을 서로 融和시켜 보자는 데에도 그 意圖가 있습니다. 우리가 提案하는 「人間으로서의 義務에 관한 宣言」이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自身の 權利만을 主張하는 行爲는 結局, 끝없는 紛糾과 葛藤을 招來할 것이라는 點과 또한, 宗教團體들이 그들 自身の 自由를 強力히 追求할 때에는 남의 自由를 尊重할 義務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可能限한 最大의 自由를 追求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充分한 義務感을 振作시킬 때 비로소 「自由」그 自體가 成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世界各國의 前職國家首班들은 1987년부터 人間行動의 倫理的 基

準에 관한 草案을 마련하고자 努力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草案은 그 후, 여러 宗教指導者들과 聖賢들의 知慧를 土臺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主張하기를 義務를 隨伴하지 않은 自由란, 結局 自由 그 自體를 破壞하게 되지만, 自由가 義務와 均衡을 갖추게 되면, 그 때에는 自由가 더 낫은 世界를 創造하여 나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될 것이라 일러 주었습니다.

世界 前職國家首班들은 다음의 宣言文 草案을 여러분들께서 檢討하고 鑒 援해 줄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世界義務에 관한 世界宣言」

(世界 前職國家首班會議 提案)

<前 文>

人間家族 모든 構成員들의 고유한 尊嚴성과 그들의 平等한 權利를 認定 하는 것은 自由와 正義, 그리고 世界平和를 위한 基礎가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人間 固有의 權利에는 義務와 責任이 隨伴되는 것이다.

權利만을 排他的으로 主張하는 것은 葛藤과 分裂, 그리고 끝없는 紛爭을 낳게 될 것이며, 한편 人間으로서의 義務를 저버리는 것은 無秩序와 混亂을 招來케 할 것이다.

法の支配와 人權의 向上은 사람들이 얼마나 正義롭게 行動하느냐에 달려 있다.

全地球的 問題들을 全世界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들과 文化圈들이 다 함께 尊重할 수 있는 理想과 價値, 그리고 共通的 規範에 의하여서만 可能하다.

法이나 制度的 裝置, 또는 協約만으로는 達成할 수 없는 人類共同의 目標은 모든 民族이 國內적으로나 國際적으로 더 나은 社會秩序를 定着시키려고 誠心誠意껏 努力함으로써만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進歩와 發展을 위한 人類의 所望은 오로지 어느 時代, 어느 民族, 어느 制度에나 適用할 수 있는 合意된 價値基準에 의하여서만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總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든 國家와 民族들이 지켜야 할 共同의 基準으로서 「人間義務에 관한 世界宣言文」을 宣布하는 바이다. 모든 社會의 모든 個人 및 組織體들이 항상 마음 속에 이 「人間義務에 관한 宣言文」을 간직함으로써 그들의 構成員들을 啓蒙하고, 生活共同體를 發展시켜 나아가는데 貢獻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 世界의 모든 民族들은 이미 「人間義務宣言」에서 天命된 決意를 더욱 굳게 새로히 다짐하여야 한다. 즉, 人間 相互間의 博愛精神을 드높이고, 人間의 尊嚴성과 固有한 自由와 平等

의 精神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人間으로서의 基本的인 義務感을 모두에게 가르치고, 全世界를 통하여 宣揚하여야만 한다.

人間성을 위한 基本的 原則들

第1條

모든 사람은 相對方의 性이나 種族, 社會的 地位, 政治的 性向, 言語, 年齡, 國籍이나, 宗教에 關係없이 모든 사람들을 人間的인 方法으로 대하여야 할 義務를 지닌다.

第2條

어떠한 形態이든간에, 非人間的 行爲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支持하거나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相對方의 人間으로서의 價値와 尊嚴性을 지켜주기 위하여 最善을 다 할 義務가 있다.

第3條

어떠한 사람이나, 集團, 組織體, 또는 어느나라 軍隊나 警察도 善(Good)과 惡(evil)을 超越하여 君臨할 수는 없다. 즉, 모두들 倫理的 基準(Ethical standards)을 遵守하여야만 한다. 누구나가 每事에 있어서 「善」을 勸獎하고 「惡」을 排斥하여야만 한다.

第4條

良心과 理性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家族과 社會, 種族과 國家, 그리고 宗教團體에 대하여 博愛의 精神으로 義務를 져야만 한다. 즉, 自身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은, 결코 남에게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非暴力과 生命尊重

第5條

모든 사람은 生命尊重의 義務를 진다. 누구도 남을 해치거나, 拷問하고 殺害할 權利는 없다. 비록 正當化된 個人, 또는 社會의 自衛行爲라 할지라도 例外가 될 수는 없다.

第6條

國家, 集團, 個人들간의 紛爭들은 暴力없이 解決하여야만 한다. 어느 政府라 할지라도 殺人과 테러行爲에 參與하거나, 容認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女子들과 어린아이들 및 其他 民間人들을 戰爭의 道具로 濫用할 수 없다. 모든 市民들과 公職者들은 平和的이고, 非暴力的인 方法으로 行動할 義務가 있다.

第7條

모든 사람은 無限히 소중한 存在이기 때문에 無條件 保護되어야만 한다. 動物들과 自然環境도 保護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現存하는 住民들과 또한 未來의 後孫들을 위하여, 地球의 土壤과 물, 그리고 空氣를 保護할 義務가 있다.

務가 있다.

正義와 博愛

第8條

모든 사람은 바르고 公正하고 正直하게 行動할 義務를 지닌다. 어느 個人이나 集團도 남의 財産을 恣意的으로 竊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第9條

必要한 生活手段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貧困과 營養失調, 그리고 無知와 不平等을 克服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 할 義務가 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의 尊嚴性, 自由, 安全, 그리고 正義를 保障하기 위하여 全世界的으로 地球環境의 破壞를 피할 수 있는 開發方法을 探索하여야만 한다.

第10條

모든 이들은 그러한 努力을 통하여 저마다의 才能을 開發할 義務가 있다. 즉, 그들에게 敎育을 받고, 實質的인 일터를 찾을 수 있는 機會의 均等이 保障되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은 困窮에 처하여 있는 사람, 불우한 사람, 身體障礙者, 그리고 社會的 差別에 의한 犧牲者들을 도와 주어야만 한다.

第11條

모든 財産과 「富」(Wealth)는 人類의 發展과 正義實現에 맞도록 責任있게 使用되어야만 한다. 經濟力과 政治力은 남을 支配하기 위한 道具로 取扱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經濟的 正義와 社會秩序를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 되어야 한다.

眞實性과 寬容

第12條

모든 사람은 眞實되게 말하고, 行動할 義務가 있다. 아무리 높은 地位에 있거나, 막강한 자리에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私生活의 權利와 個人的, 또는 專門的 職業에 따른 秘密維持의 權利는 尊重되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여야만 할 義務를 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第13條

政治人, 公務員, 財界指導層, 科學者, 作家나 藝術家등 그 누구도 一般的인 倫理基準을 지켜야만 한다. 또한, 비록 患者와 依頼人에 대한 특별한 義務를 지고 있는 醫師, 法曹人, 또는 其他 專門職種이나 그의 모든 倫理規範은 眞實性과 公評性과 같은 一般的 基準을 優先적으로 反映하여야만 한다.

第14條

正義로운 社會 具現을 위하여서는 言論이 公衆에게 情報를 傳達하고, 政府나 社會機關들의 行動을 批判할 수 있는 自由가 保障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言論機關의 自由도 分別力과 함께 責任있는 姿勢로 行使되어야만 한다. 言論媒體의 自由는 正確하고 眞實된 報道만을 할 特別한 責任이 있다. 人間의 品位와 尊嚴性을 失墜시킬 衝動的 報道는 절대로 삼가야만 된다.

第15條

宗敎의 自由는 保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各 宗敎指導者들에게는 自身들과 信仰을 달리하는 이들을 差別化하는 行動이나, 그들에 대한 偏見을 가진 表現들을 絶對 삼가야 할 特別한 義務가 있다. 그들은 憎惡와 狂信主義를 衝動하거나, 宗敎戰爭을 正當化시키려고 하여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서로 尊重하고, 서로 寬容할 수 있도록 主導해 나아가야만 한다.

相互尊重과 同伴者役

第16條

모든 男女들은 서로間에 尊敬心을 보이고, 모두가 同伴者라는 認識을 內面化시킬 義務를 지고 있다. 누구도 他人을 性的으로 虐待하거나, 屈伏시키는 등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性的 同伴者들은 서로 幸福을 위하여 돌보아 주어야 할 義務感을 느껴야만 한다.

第17條

모든 文化的이거나 宗敎적인 多樣性에도 불구하고, 結婚은 사랑과 獻身,

그리고 容恕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結婚은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의 安
全을 保障하고자 하는데 主안점을 두어야만 한다.

맺는말

第19條

이 宣言文은 결코, 어느 國家나 集團, 또는 個人으로 하여금, 1948年의 世
界人權宣言이나, 本 義務宣言에서 提示되고 있는 義務, 權利, 그리고 自由를
破壞하려는 目的으로 하는 行爲나, 또는 어떠한 活動을 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解析되어서는 안 된다.

署名

「人間義務에 관한 世界宣言」은 다음의 분들이 署名하였다.

- 독일 Helmut Schmidt(Honorary Chairman)
 Former Chancello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호주 Malcolm Fraser(Chairman)
 Former Prime Minister of Australia
- 화란 Andries A. M. van Agt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Netherlands
- 태국 Anand Panyarachun
 Former Prime Minister of Thailand
- 코스타리카 Oscar Arias Sanchez
 Former President to of Costa Rica

영국	Lord Callaghan of Cardiff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미국	Jimmy Carter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멕시코	Miguel de la Madrid Hurtado Former President of Mexico
스위스	Kurt Furgler Former President of Switzerland
프랑스	Valery Giscard d'Estaing Former President of France
스페인	Felipe Gonzalez Marquez Former Prime Minister of Spain
잠비아	Kenneth Kaunda Former President of Zambia
싱가포르	Lee Kuan Yew Former Prime Minister of Singapore
일본	Kiichi Miyazaw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콜롬비아	Misael Pastrana Borrero Former President of Colombia(deceased in August)
이스라엘	Shimon Peres Former Prime Minister of Israel
포르투갈	Maria de Lourdes Pintasilgo Former Prime Minister of Portugal
브라질	Jose Sarney

Former President of Brazil

- 한국 Shin Hyon Hwak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 핀란드 Kalevi Sorsa
Former Prime Minister of Finland
- 캐나다 Pierre Elliott Trudeau
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 스웨덴 Ola Ullsten
Former Prime Minister of Sweden
- 키프로스 Geprge Vassilliou
Former President of Cyprus
- 오스트리아 Franz Vranitzky
Former President of Austria
- 레바논 Selim Hoss
Former Prime Minister of Lebanon